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으로 허용하고 있는 물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 개선

3.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도시철도시설의 범위에 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부지에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

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의2)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가능한 물류사업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한 자산을 이용한 물류사업을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0. 7. ~ 11. 16.)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제2조의2제3항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사업
2.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3. 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도시철도시설)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법 제2조제6의2호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에 설치하는 시설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 ② (생 략)	제2조의2(도시철도부대사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6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 중 도시철도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u><신 설></u>	1.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사업
<u><신 설></u>	2.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을 위한 사업

<u><신 설></u> ④ ~ ⑥ (생 략)	3. <u>도시철도운영자가 소유하고</u> <u>있는 자산(법 제2조제3호의</u> <u>도시철도시설을 포함한다)을</u> <u>이용한 사업</u>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4133